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562,365,856	346,870,976
일반회계		10,393,153,813	311,794,614
특별회계		1,169,212,043	35,076,361
	기타특별회계	1,169,212,043	35,076,36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617,665	18,53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7,472,250	1,724,168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3,406,631	402,19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5,280,094	16,658,40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06,557	36,19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680,412	170,412
	소방특별회계	535,144,434	16,054,333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404,000	12,1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확정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050,19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6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